

보도자료

2011년 5월 19일(목)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통신정책국 통신경쟁정책과 최영진 과장(☎750-2530)
통신경쟁정책과 김남철 사무관(☎750-2536) nck04@kcc.go.kr

방통위, 「망 중립성 정책방향」 논의 본격화

- 망 중립성 포럼 출범 및 토론회 개최(5. 26(목)) -
- 정책 질의서를 활용하여 IT전문가, 블로거 대상 의견수렴 추진 -

스마트 시대 인터넷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이용자 선택권과 통신사업자 투자 유인 보장 간의 균형점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최근 망 중립성 포럼 구성을 완료하고, 5월 26일(목) 오후 3시 30분, 명동 은행회관에서 「스마트시대 망 중립성 정책방향: 네트워크 개방 및 관리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는 국내 주요 통신사, 인터넷기업, IT제조사 및 학계·연구계 전문가가 참여한다.

※ 망중립성 :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는 모든 트래픽은 그 내용 및 유형, 서비스나 단말기 종류, 발신자와 수신자와 무관하게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원칙

망 중립성 포럼은 한양대학교 김용규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여 학계, 통신사, 인터넷, 제조사, 시민단체 등 총 24명으로 구성하였다. 포럼은 최근 스마트 기기 확산으로 급변하는 통신환경을 진단하고 콘텐츠-네트워크-기기-이용자 등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최근 스마트 기기 확산은 모바일인터넷 전화(mVoIP), 스마트TV, 클라우드컴퓨팅 등 새로운 서비스 등장을 가능하게 했고, 스마트 워크, 통신과 비통신산업(자동차, 조선 등)간 융합도 촉진하고 있다.

망 중립성 정책은 스마트 시대 통신사업자, 이용자, 인터넷사업자간 권한과 책임(수익 및 비용분담) 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것으로, 참여자간 첨예한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수적이다.

※ 통신사업자는 인터넷사업자, 이용자에게 망투자비 분담을 요구하고, 인터넷사업자 등은 통신네트워크 개방성 유지를 주장

방송통신위원회는 망 중립성 포럼 운영과 병행하여 업계, 학계 등 IT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정책 자문도 구할 계획이다. 정책 자문(consultation)은 기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한 소극적인 의견수렴 방식에서 벗어나, 망 중립성에 관한 핵심쟁점 사항을 질의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통신사업자, 교수, 블로거 및 IT 전문기자 등에게 발송하여 심층적인 답변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질의서는 2010년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운영한 “망중립성 포럼”의 논의사항과 미국, EU 등 해외 규제기관의 논의 동향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포럼 운영 결과와 정책 자문 등을 통해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금년 중에 망 중립성에 관한 정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 망 중립성 관련 정책 자문 운영(안) > —

- (자문대상) 통신사업자, 인터넷기업, 블로거, IT전문기자, 네티즌 등
- (자문방법) 이메일, 방통위 홈페이지, 블로그, 포털사이트, SNS 등
- (의견수렴 기간) '11년 5월~'11년 8월 (4개월 간)

- 붙임 : 1. 망중립성 포럼 위원 명단 1부
2. 망중립성 정책방향 세미나 개최계획(안) 1부
3. 망중립성 정책자문 질의서(안) 1부. 끝.

<붙임1>

망 중립성 포럼 위원 명단

구 분		성명	소속	비고
학 계 (9)	경제	김용규	- 한양대학교 경제학과	위원장
		김성환	-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통신정책, 규제
		박재천	- 인하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통신정책
	법 학	홍대식	- 서강대학교 법학부	법제도
		이희정	- 고려대학교 법학부	법제도
		최경진	- 경원대학교 법학부	법제도
	공학	황준석	- 서울대학교 기술경영경제정책대학원	융합/네트워크 정책
		모정훈	- 연세대학교 정보산업공학과	네트워크 기술/정책
		윤찬현	- KAIST 전기 및 전자공학부	클라우드컴퓨팅
정부 연구계 (5명)	최영진	- 방송통신위원회 통신경쟁정책과장	-	
	변재호	- ETRI 책임연구원	통신정책, 규제	
	조기성	- ETRI 팀장	스마트TV기술	
	이종화	- KISDI 연구위원	통신정책, 규제	
	나성현	- KISDI 연구위원	통신정책, 규제	
업 계 (9명)	김효실	- KT 상무	통신	
	하성호	- SK텔레콤 상무		
	김형곤	- LG유플러스 상무		
	한종호	- NHN 이사	인터넷 콘텐츠	
	이병선	- 다음커뮤니케이션즈 본부장		
	정재훈	- 구글코리아 변호사		
	최성진	-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		
	미 정	- 삼성전자	기기·제조사	
	서영재	- LG전자 상무		
소비자단체 (1명)	전응휘	-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 단체	

<붙임2>

망중립성 정책방향 세미나 개최계획(안)

□ 행사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1. 5. 26(목) 15:30~18:30,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 주최 : 방송통신위원회(KCC)
- 주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 참석 : 학계, 연구계, 업계, 시민단체 전문가 및 일반인(총 200여 명)

□ 행사 진행순서

시 간		구 분		비고
오프닝	15:30~15:40	개회 및 축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주제 발표	15:40~16:10 (30')	(1) 트래픽 관리 및 망중립성 : 정책이슈와 대 응방향		KISDI 나성현 연구위원
	16:10~16:25 (15')	(2) 인터넷 트래픽의 증가와 네트워크 관리의 필요성		KT 김효실 상무
	16:25~16:40 (15')	(3) 생태계의 개방성 확보를 위한 망중립성 정책의 필요성		NHN 한종호 이사
	16:40~17:00 (20')	Coffee Break		
패널 토의	17:00~18:00 (60')	사회	김용규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	
		토론	이희정 (고려대 법학부 교수) 황준석 (서울대 기술경영경제정책대학원 교수) 모정훈 (연세대 정보산업공학과 교수)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이사) 하성호 (SK텔레콤 상무) 정재훈 (구글코리아 변호사) 김효실 (KT 상무) 한종호 (NHN 이사) 나성현 (KISDI 연구위원) 최영진 (방송통신위원회 통신경쟁정책과장)	
	18:00~18:20 (20')	질의·응답 및 폐회		

망중립성 정책 자문 질의서(안)

□ 통신시장 현황과 통신 네트워크 정책의 목표

질문 1. 통신시장의 생태계를 구성하는 각 player(네트워크 사업자, 콘텐츠사업자, 플랫폼 사업자 등)간의 거래관계 등을 고려할 때 현재 전체 생태계내에서 특정 player의 지배력 행사 가능성에 대해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2. 통신 네트워크의 성격에 대해서는 공공 인프라로서 공공성을 강조하는 견해¹⁾와 사적재산권을 강조하는 견해²⁾가 맞서고 있습니다. 향후 정책수립에 있어 통신네트워크 성격규정에 있어서 보다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¹⁾인프라로서의 인터넷은 누구나 이를 이용하여 혁신을 이루어낼 수 있는 공공자산 (innovation commons)이라는 관점

²⁾모든 자원은 재산권이 부여될 때 그 가치가 극대화되는 바, 인터넷망에 대한 사유재산권의 확립은 필수적. 통신망은 적절한 투자보수가 주어질 때에만 민간사업자들에 의해 구축될 수 있다는 시각. 통신망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경우 공유지의 비극(네트워크 혼잡)이 불가피

질문 3. 향후 통신정책의 목표 또는 정책방향 수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이용자 권리, 가계통신비 절감, 모바일 콘텐츠 산업 활성화, 통신사업자의 네트워크 투자유인 등)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국내 통신 네트워크 인프라 및 경쟁 상황

질문 4. 국내 통신시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유무선 네트워크 인프라 및 서비스 제공 환경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에 근거해 유선 통신망의 경우 트래픽 증가에 따른 트래픽 관리 필요성 등이 크지 않다는 견해도 존재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내 FTTH/B의 가구대비 커버리지는 약 67%로 OECD 평균 17.0% 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 (' 08년 기준), 국내 3G 이동통신 네트워크의 커버리지는 약 99%(인구기준)으로 OECD 평균 81.1% 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 (' 08년 기준)

질문 5. 국내의 경우 미국, EU 등과 비교해 초고속인터넷 시장 경쟁상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해 특정 통신사업자의 지배력 행사에 대한 우려가 낮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즉 망중립성과 관련된 규제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견해가 존재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내 인터넷접속 시장의 경우 설비기반 경쟁이 활발하게 전개, '10년말 KT의 가입자 기준 점유율은 43.1%로 도매규제를 바탕으로 경쟁활성화가 이루어진 유럽 평균과 유사 (도매 회선을 포함할 경우 유럽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점유율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

□ 트래픽 관리 및 망중립성 관련 현안 이슈

질문 6. 현재 국내 이동통신사들은 3G 망에서의 mVoIP 사용을 부분적으로 차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3G망에서 mVoIP 전면적으로 허용하도록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동통신사의 3G망을 mVoIP 애플리케이션 등 기존 이동전화와 대체성이 높은 서비스(음성서비스)에 대해 전면적으로 개방할 경우 어떤 득실이 예상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와 같은 규제가 필요하다면 그 방법과 시점은 어떻게 결정되어야 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7. 일부 3rd party 서비스에 의해 이동통신망 과부하가 초래되는 현상들이 이미 발생했고 향후에도 이와 관련된 문제가 지속적으로 등장하리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이와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고 최종사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통신사업자와 3rd party player간의 협력 관계가 요구되는데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방식들로써 어떤 것들이 있을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3rd party player : 콘텐츠 사업자, 애플리케이션 사업자, 단말제조사 등 통신 네트워크를 매개로 이용자에게 가치를 전달하는 모든 유형의 사업자

질문 8. 향후 VOD, 스마트TV 등 대용량 트래픽을 유발하는 서비스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통신사업자의 네트워크 투자 부담이 증가하리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현재의 거래관행(통신사업자와 3rd party player간, 통신사업자와 초고속인터넷 가입자간)으로 향후 예상되는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추가적인 자원 마련이 필요하다면 어떤 방식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 QoS 제공(우선적 전송)에 따른 망이용대가 요구의 타당성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9. 스마트 TV 등 향후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새로운 형태의 “IP기반 유료 방송서비스” 및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등에 대해 통신사업자의 수직적 봉쇄 등 경쟁 관련 이슈 들이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에 대한 바람직한 접근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 10. 위에서 논의된 내용들 이외에 향후 트래픽 관리 및 망중립성과 관련되어 제기될 수 있는 이슈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사업자의 트래픽 관리 관련 권리와 의무

질문 11. 해외 규제기관들의 경우 이용자 선택권 확보 및 3rd party player들의 사업모델 개발을 위해 통신사업자의 트래픽 관리와 관련된 투명한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조치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트래픽 관리와 관련된 정보 제공이 요구된다면 어떤 유형들의 정보가 공개되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와 같은 정보 공개를 위해 기존 규제 제도가 보완되어야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기통신사업법 등은 통신사업자의 정보제공과 관련된 의무를 기술하고 있음,

전기통신사업법 제42조(정보의 제공) ①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설비 등의 제공·도매제공·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 등이나 요금의 부과·징수 및 전기통신번호 안내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정보 또는 이용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으면 협정을 체결하여 요청받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질문 12. 통신사업자가 특정 트래픽을 차단 또는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즉,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네트워크 관리를 위해서는 통신사업자의 트래픽 관리 권한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 경향이 있는데, 국내의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인 네트워크 관리”는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트래픽 관리 및 망중립성 규제의 필요성

질문 13. 트래픽 관리 및 망중립성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할지와 그 내용들이 어떤 수준으로 법제화되어야 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 망 중립성에 관한 별도 법률 제정, 가이드라인 제정 등)

질문 14. 트래픽 관리 및 망중립성 관점에서 유선과 무선 인터넷은 어떤 차별성이 있으며, 이와 같은 점들이 규제 장치 마련시 어떻게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